목 차

부칙

작성부서	교무학생처	제정일자	2008. 03. 01.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담 당		교무학생처장	산학입학처장	기획예산처장	사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개정이력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09. 01. 30.	- 1차 개정
2	2012. 07. 27.	-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
3	2015. 04. 27.	-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여 “교무위원회”를 설치하고 이 대학교의 주요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함에 있다.<개정 2012.7.27>

제2조(위원회 기능) 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 발전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 수립과 심의
2. 전공 구조조정 및 학생 정원조정 심의
3. 전공 및 계열 기본운영 계획 심의 및 조정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은 보직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2.7.27>

④ 위원장은 부 위원장의 제청으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 업무의 서무를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의사록을 기록, 보관한다.

제5조(회의운영) ①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제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의사진행은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세부사항)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시행한다.

부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8. 3. 1일부터 시행한다.
2. **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**시행일**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